**이해상충관리 지침**

제정 2025.08.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4조, 제45조, 회사의 내부

통제기준에 따라 회사가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

관리하여 회사와 투자자간,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기본원칙**

**제2조(투자자이익 우선의 원칙)**

① 투자자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임직원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투자자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투자자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와 임직원은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이해상충의 관리 절차**

**제4조(이해상충문제의 파악ㆍ평가ㆍ관리 등)**

① 임직원은 회사와 투자자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 및 모든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1. 서면,우편

2. 전화,팩스,전자우편, 메신저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3. 그 밖에 투자자가 요청하는 방법

③ 회사 및 모든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이해상충의 유형 등)**

① 회사가 영위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되는 거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회사 및 그 밖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

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1. 특정한 투자 또는 투자대상에 있어서 회사의 고유재산운용과 집합투자기구 운용

간의 이해상충

나. 집합투자기구재산의 평가에 관한 이해상충

다. 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한 비용의 부담,처리에 관한 이해상충

라. 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집합투자기구 간의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마. 회사의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의 영업행위 또는 고유재산 투자와 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

바. 전담중개업자, 집행중개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간의 이해상충

2.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가.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

나.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

다.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다른 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

다.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 간의 이해상충

3. 회사의 임직원(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기구 간의 이해상충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가. 선행매매로 인한 이해상충

나. 개인적인 투자행위로 인한 이해상충

다. 다른 업무의 겸영 등 대외활동 인한 이해상충

라. 재산상 이익 또는 향응의 제공이나 수령으로 인한 이해상충

4.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의 관여 또는 특정 조건의 투자로 인한 이해상충

나. 투자운용인력 등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 수행 임직원의 특정 또는 교체로 인한 이해상충

다. 다른 투자자와의 다른 청약 또는 환매 처리로 인한 이해상충

라. 그 밖에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요청으로 인한 이해상충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회사가 달리 정한 이해상충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하는 경우 해당 및 후속 거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준법감시인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사전적으로 협의하여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교류차단**

**제6조(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대상 정보의 종류)**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다음 각 호의 부문 간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제외한다.

1. 고유재산 운용업무.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운용업무는 제외한다.

*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사채등

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환매조건부매매로 매수 또는 매도한 증권

라. 자회사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바. 소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등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거래로서 당해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사. 그 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3. PEF투자재산 운용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부문: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제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1. 고유재산 운용업무 부문: 회사의 금융투자상품(제1항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3. PEF재산 운용업무 부문 :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③ 회사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사내 정보교류차단장치와 사외 정보교류차단장치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④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대상은 각 부문의 교류차단정보를 생산하는 업무담당부서로 한정하고 후선업무담당부서는 차단장치 설치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한다.

⑤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와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는 정보)**

①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말한다) 및 특별자산(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을 말한다) 운용 관련 정보. 다만 상장 지분증권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2.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제8조(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회사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하 매매거래등 이라 한다)이 제한되도록 해당 법인을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상품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거래주의 상품 목록 지정 기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을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회사 및 임직원과 투자자 간, 회사와 임직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2. 회사를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제8조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4. 회사가 제8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5. 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

정보교류차단과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및 이 규정에 별도의 제한이 없더라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에 정한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자료의 기록·유지 등과 관련된 별도의 제한은 당연히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08월 19일부터 시행한다.